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8. 25 선고 2019나21232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8. 25 선고 2019나212328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포천시법원 2019. 8. 13 선고 2018가소7872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충호

변론 종결 2020. 7. 7.

판결 선고 2020. 8. 25.

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9. 8. 13. 선고 2018가소7872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1,5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1. 15.부터 2020. 8. 25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 중 2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 - 2천만 원 및 그에 대한 2018. 2. 22. 이후 지연손해금.

항소취지 -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 원고 청구기각.

이 유

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(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,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친다.

제1심 판결문 2쪽 다섯째 줄부터 열째 줄까지를 "원고는 2015. 7. 28. 무렵 피고로부터 900만 원(이율 연 24%)을 빌렸다[을2. 1천만 원에서 5개월분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받음]. 원고는 그 채무 담보를 위해 C에 대한 근저당권부 질권(피담보채권 3,000만 원)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데, 피고는 2018. 2. 21. 무렵 C로부터 3,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원고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였다.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1,458만 원[원금 900만 원 + 이자 558만 원(900만 원×24%×31개월/12개월)]이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1,542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."로 고친다.

제1심 판결문 3쪽 열 두번째 줄 아래를 "따라서, 피고는 원고에게 1,5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. 11. 15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. 8. 25.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"로 고친다.

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하고,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.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박이규

판사이흥권

판사이효두